

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60일	
신청인	기관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전화번호		
신청내용	교육 분야	교육과정	교육 정원	
			1일 1년	
	철도차량정비기술 교육	[]고속철도차량		
		[]일반철도차량		
[]도시철도차량				

「철도안전법」 제24조의4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비교육훈련계획서(정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합니다) 2. 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.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(법인 및 단체에 한정합니다) 4. 정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·학력·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.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.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 시행 방법 및 절차 7. 정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(印影: 도장 찍은 모양) 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